



고용노동부

##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

수신 관내 건설현장 사업주 귀하

(경유)

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

### 1. 관련근거

- 가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2조(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(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)
- 나.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11호)」

2.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'**분말형태의 이온음료**' 에 한정하여 '**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**'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였으나, 건설업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6월부터 **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**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# -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-

|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<br>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11호, 2025.2.1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용가능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6.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사용기간 :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</b>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법·영·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장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, 식용소금, 식염포도당,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            |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          |
| 바. 온열·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·해체·임대비용 및 냉·난방기기의 임대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천막, 텐트 등 간이 휴게 시설(구매·설치 및 해체비용), 컨테이너(임대비용)         |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제2항 적용        |
| 9. 법 제36조에 따른 <b>위험성평가</b>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·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<b>산업안전보건위원회</b> 또는 법 제75조의 <b>노사협의체</b> 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 | <b>액상 형태의 이온음료</b> , 냉장고·냉동고·제빙기 임대비용, 아이스조끼, 쿨토시 등 |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|

끝.

##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



근로감독관

김려경

팀장

이경열

과장

전결 2026. 6. 18.

이동규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감독과-3820

(2026. 6. 18.)

접수

우 50635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산재예방감독과

/ <http://moel.go.kr/yangsan/>

전화번호 055-370-0956

팩스번호 0503-8803-0471

/ [kun0351@korea.kr](mailto:kun0351@korea.kr)

/ 대한민국 공개

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